#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70

발의연월일: 2021. 7. 6.

발 의 자:노웅래·김남국·김윤덕

민병덕 • 박성준 • 서영석

안호영 · 이학영 · 임종성

홍정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가상자산거래가 만연해 있고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 6제1항제7호 신설 등).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 조의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를 "주택임대소득" 으로 한다.

제8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6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87조의7제1항 중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를 "제87조의15부터 제87조의17까지에"로,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파생상품소득금액 및 가상자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87조의17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각각 제87조의19부터 제87조의29까

지로 하고, 제87조의17 및 제87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7조의17(가상자산소득금액) ①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 제7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 입금액(이하 "가상자산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8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가상자산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7조의18(가상자산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0(종전의 제87조의18)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상자산소득금액

제87조의22(종전의 제87조의20)제1항 표 중 "제87조의18"을 "제87조의 20"으로 한다.

제87조의24(종전의 제87조의22)제3항 중 "제87조의27"을 "제87조의29"

로 한다.

제87조의25(종전의 제87조의23)제3항제1호 중 "제87조의22"를 "제87조의24"로, "제87조의27"을 "제87조의2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7조의26제4항"을 "제87조의28제4항"으로 한다.

제87조의26(종전의 제87조의24)제1항 중 "제87조의23제1항"을 "제87조의2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7조의22"를 "제87조의24"로, "제87조의27"을 "제87조의29"로 한다.

제87조의28(종전의 제87조의26)제1항 중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 를 "제87조의24 및 제87조의2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7조의25"를 각각 "제87조의27"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7조의22"를 "제87조의24"로,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7조의27"을 "제87조의29"로 한다.

제119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제11호까지"를 "제11호까지 및 제11호의2"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파목 중 "타목"을 "카목"으로 한다.

11의2. 제87조의6제1항제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의2. 제119조제11호의2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 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26조의12제1항 중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을 "제87조의22, 제87조의27, 제87조의28"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 를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금융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은 제외한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한다.

7의2. 제119조제11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제12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2) 제12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제156조제16항 중 "제119조제12호타목"을 "제119조제11호의2"로, "기 타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제1항제8호 나목"을 "제1항제7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87조의27까지"를 "제87조의16까지, 제87조의19 부터 제87조의29까지"로 하고, 제1조제2호 중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 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ㆍ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ㆍ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26조제1항제8호"를 "제84조제4호, 제119조제12호파목, 제126조제1항제1호의2, 제156조제1항제8호"로,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제87조의27까지"를 "제87조의16까지, 제87조의19부터 제87조의29까지"로 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를 "제164조 의4"로,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삭제한다.

부칙 제20조제2항 중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를 "제126조제1항제1호의2"로,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2조 중 "제12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 ·제17항"을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으로, "2022년 1월 1일" 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6 제1항제7호, 제87조의7제1항, 제87조의17, 제87조의18, 제87조의20제 1항제1호라목, 제87조의22제1항, 제119조제11호의2ㆍ제12호, 제126조 제1항제1호의2, 제126조의12제1항, 제127조제1항제9호 단서,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제7호, 제87조의7

제1항, 제87조의17, 제87조의18, 제87조의20제1항제1호라목, 제87조의2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
| 일부개정법률                    | 일부개정법률             |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 3                  |
|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           |                    |
| 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        | 8                  |
| 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            |                    |
| 득"이라 한다)                  |                    |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다. <u>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u> | 다. <u>제21조제2항</u>  |
| <u>은 조 제2항</u> 에 따른 기타    |                    |
| 소득                        |                    |
| 라.•마. (생 략)               | 라.•마. (현행과 같음)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 제21조(기타소득) ①       |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                    |
|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            |                    |
| 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                    |
|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                    |
|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 1. ~ 26. (생 략)
-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ㅣ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 산소득"이라 한다)
- ② ~ ⑤ (생 략)

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2. (생략)
-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 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 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 다.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1. ~ 26.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 | <삭 제> 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 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 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 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 ① (생략)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 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 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 항을 적용한다.

③ ~ ⑥ (생 략)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지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u><</u>삭 제>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현 행과 같음)

|   | 고)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
|   | 주택임대소득             |
|   |                    |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 | 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
|   |                    |
|   |                    |
|   |                    |

다.

- 1. 2. (생략)
-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

   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

   우

4. (생략)

제8/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
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 6. (생 략) <u><신 설></u>

하다.

② (생략)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저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

| •       |      |     |
|---------|------|-----|
| 1. · 2. | (현행과 | 같음)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 ①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 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 소득"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 1 |
|------------------|---|
|                  |   |
|                  |   |

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 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 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 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 ------제87조의15부터 제87조 의17까지에----------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파생상품소득금액 및 가상자산 소득금액-----.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의17(가상자산소득금액) ①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제87조의6 제1항제7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 득의 총수입금액(이하 "가상자 산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 87조의18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가상자산소득금액의 구체적 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8(가상자산소득금액 필 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가 상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u>가상자산양도가액에서</u>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양도되는 가상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으로 한다.

<u>제87조의17</u>(기준시가의 산정) (생략)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 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 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 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 한다.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 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 다. (생 략)

<신 설>

2. (생략)

| ② 제1항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
|------------------------------|
|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
|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              |
| <u> 두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u> |
| 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             |
| 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             |
| <u>다.</u>                    |
| ③ 그 밖에 가상자산의 필요경             |
| 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
| 령령으로 정한다.                    |
| 제87조의19(기준시가의 산정) (현         |
| 행 제87조의17과 같음)               |
|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 기본공           |
| 제) ①                         |
|                              |
|                              |
|                              |
|                              |
|                              |
| 1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가상자산소득금액                  |
| 2. (현행과 같음)                  |

②・③ (생략)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 율) (생략)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 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 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 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 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금융투자소득세 
$$=$$
 A  $\times \frac{B-C}{D} \times E$ 

- A: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 세액
-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 C: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D: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 <u>한 감면율</u>

## ②·③ (생 략)

고) (생략)

(생 략)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

| ②・③ (현행과 같음)        |   |
|---------------------|---|
|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세의 서  | 1 |
| 율) (현행 제87조의19와 같음) |   |
| 제87조의22(금융투자소득세액의   | 4 |
| 감면) ①               | _ |
|                     | _ |
|                     | _ |
|                     | _ |
|                     | _ |
|                     | _ |

- A: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샌 출세액
-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 C: 제87조의20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 제 금액
- D: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감면율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 예정신 고) (현행 제87조의21과 같음)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② | 제87조의24(예정신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
|-------|----------------|
|       | <u>제87조의29</u> |
|       |                |

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생 략)

<u>제87조의23</u>(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 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총결정세액이 <u>제87조의2</u> 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u>제87조의27</u>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을 초과하는 자
- 2. <u>제87조의26제4항</u>에 따라 환 급을 받으려는 자
- 3. 4. (생략)
- ④·⑤ (생 략)
-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 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 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을 <u>제87조의23</u> 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

| ④ (현행과 같음)                |
|---------------------------|
|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         |
| 준 확정신고) ①·② (현행과          |
| 같음)                       |
| ③                         |
|                           |
|                           |
|                           |
| 1                         |
| 제87조의2                    |
| <u>4</u>                  |
| <u>제87조의29</u>            |
|                           |
|                           |
|                           |
| 2. <u>제87조의28제4항</u>      |
|                           |
| 3. • 4. (현행과 같음)          |
| ④·⑤ (현행과 같음)              |
| <u>제87조의26</u> (확정신고납부) ① |
|                           |
|                           |
|                           |
| 제87조의25                   |
| 제1항                       |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 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 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생 략)
-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 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 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 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

| ② (현행과 같음)        |
|-------------------|
| (3)               |
| 제87조의24           |
| <u> </u>          |
| -1)07 - A)00      |
| <u>제87조의29</u>    |
|                   |
|                   |
| 제87조의27(금융투자소득과세표 |
| 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현행 |
| 제87조의25와 같음)      |
| 제87조의28(금융투자소득세액의 |
| 징수・환급) ①          |
| 제87조의24 및 제8      |
| 7조의26             |
| 122-120           |
|                   |
|                   |
|                   |
|                   |
|                   |
| ②                 |
|                   |
|                   |
| 제87조의27           |

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 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 기본법 시47조의5제1항에 따 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 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 액만을 징수한다.

- 1. (생 략)
-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 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 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 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1. (현행과 같음)<br>2 |
| 1. (현행과 같음)<br>2 |

- · 징수하는 경우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1. <u>제87조의22</u>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u>제87조의24</u>에 따 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2. (생략)
- 3. 제82조 및 <u>제87조의27</u>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
- 4. (생략)

<u>제87조의27</u>(준용규정) (생 략)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저 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등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 1. ~ 11. (생 략) <신 설>

| <b>4</b>                       |
|--------------------------------|
|                                |
|                                |
|                                |
|                                |
|                                |
|                                |
| 1. 제87조의24                     |
| <u>제87조의26</u>                 |
|                                |
| 2. (현행과 같음)                    |
| 3 <u>제87조의29</u>               |
|                                |
| 4. (현행과 같음)                    |
| 에 <u>87조의29</u> (준용규정) (현행 제87 |
| 조의27과 같음)                      |
| 세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
| 득)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
| <u>11의2.</u> 제87조의6제1항제7호에     |
|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                 |
|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
|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 15 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 9호부터 <u>제11호까지</u>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

가. ~ 카. (생 략)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삭 제>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br/>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br/>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br/>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br/>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br/>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br/>"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br/>한다)가 보관・관리하는<br/>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 <u>가상</u>       |
|---------------|-----------------|
| 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 | <u> </u>        |
|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시 | <del>)</del> 업자 |
| 등"이라 한다)가 보관・ | 관리              |
| 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  | <br>는 경         |
| 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  | <br>범으로         |
|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  | <br>는 바         |
|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포함              |
| 한다]           |                 |
|               |                 |

| 2   |               |   |     |
|-----|---------------|---|-----|
|     |               |   |     |
|     | <u>제11호까지</u> | 및 | 제11 |
| 호의2 |               |   |     |
|     |               |   |     |
|     |               |   |     |

가. ~ 카. (현행과 같음) <u><삭 제></u>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 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 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 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 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 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 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제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 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 -

| 파 <u>카목</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
| 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 D               |
|                 |
|                 |
|                 |

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 2. (생략)
-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 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 <u>.</u>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19조제11호의2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시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 2. (현행과 같음) <삭 제>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 ② ~ ⑥ (생 략)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6,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 ②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가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 ② ~ ⑥ (현행과 같음)<br>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br>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
|--|
| <u>제87조의22,</u> 제87조의27,<br><u>제87조의28</u>               |
|  |
|  |
|  |
|  |

한다.

- 1. ~ 5. (생략)
-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은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 다. <u>제21조제1항제23호</u>, 제24 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 득
- 7. · 8. (생략)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금융투</u> <u>자소득</u>

#### ② ~ ⑨ (생 략)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 호부터 <u>제6호까지 및 제9호부</u> 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 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 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 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

| 1. ~ 5. (현행과 같음)        |
|-------------------------|
| 6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
| 제24호                    |
|                         |
| 7. • 8. (현행과 같음)        |
| 9 <u>금융투</u>            |
| 자소득. 다만, 가상자산소득은        |
| 제외한다.                   |
| ② ~ ⑨ (현행과 같음)          |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
| 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 ①                       |
| <u>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u> |
| 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      |
|                         |
|                         |
|                         |
|                         |
|                         |
|                         |
|                         |

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 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원천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다

납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119조제11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
 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 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생 략)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           | <u>에</u> | ਠੋ | #당        | 하는       | =        | 급   | 백고       | <u> </u> | <u>같</u>   |
|-----------|----------|----|-----------|----------|----------|-----|----------|----------|------------|
|           | <u>은</u> | ই  | _에        | 따:       | 라        | 계   | 산현       | 한        | 금          |
|           | <u>액</u> | 의  | 100       | )분 :     | 의        | 20  | 에        | 해        | 당          |
|           | 하 :      | 늗  | 금역        | <u> </u> | 중        | 적 ( | <u> </u> | 금        | 백          |
| <u>2)</u> | )        | 제  | 126       | 조제       | 11       | 항ス  | 11.      | 호 9      | <u> 의2</u> |
|           | 에        | и  | ·<br>구른   | 7]       | -상       | 자   | 산으       | 4        | 필          |
|           | <u>요</u> | 경보 | 비가        | ই        | <u> </u> | 되   | 지        | 아        | 니          |
|           | <u>한</u> | 경  | 우:        | 기        | 급-       | 급이  | 백의       | 1        | 00         |
|           | <u>분</u> | 의  | <u>10</u> |          |          |     |          |          |            |
|           |          |    |           |          |          |     |          |          |            |

| 8. |   | - | - | <br> |   | - | - | - | - | _ | _ | - | _ | _ | - | - | - | - | - | _ | - | - | - | _ | - |
|----|---|---|---|------|---|---|---|---|---|---|---|---|---|---|---|---|---|---|---|---|---|---|---|---|---|
|    | _ | _ | _ | <br> | -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 <삭 제>

-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2)제126조제1항제3호에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 다. <u>가목 및 나목</u> 외의 기타 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 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 ② ~ ⑤ (생 략)
-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 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 거주자의 국내원천 <u>기타소득</u>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 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 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

| 다. <u>가목</u>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b>6</b>       |
|                |
| 제119조제11호의2    |
| <u>가상자산소득</u>  |
|                |
|                |
|                |
|                |
|                |
|                |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 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 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 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가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제12호 ·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5호의2·제9호·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 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 한다), 제87조의2부터 <u>제87조</u>

| ①               |
|-----------------|
|                 |
| 제1항제7호의2        |
|                 |
|                 |
|                 |
|                 |
|                 |
| ,               |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
| 일부개정법률 부칙       |
| 제1조(시행일)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제87조            |

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 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 • 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 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 • 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 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 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 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 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 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 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 호, 제127조제7항 · 제8항, 제1 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 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 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 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 정규정: 2023년 1월 1일

| 의16까지, 제87조의19부터 제8 |
|---------------------|
| 7조의29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 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 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 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 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 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 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 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 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2 년 1월 1일

3. • 4. (생략)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제2 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12호·제13호, 제17조제1항제 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u>제87</u> 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 호, 제127조제7항·제8항, 제12 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 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 2. 제84조제4호, 제119조제12호    |
|--------------------------|
| 파목, 제126조제1항제1호의2,       |
| 제156조제1항제8호              |
|                          |
|                          |
|                          |
|                          |
|                          |
|                          |
|                          |
|                          |
| 2022                     |
| <u>2023</u>              |
| 년 1월 1일                  |
| ㅇ 4 /귀킈 ㅋ ㅇ \            |
| 3. • 4. (현행과 같음)         |
|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
|                          |
|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
|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br>적용례) |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용례) ① 제164조의4-----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 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 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 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 ----2023년 1월 1일-----상자산을 양도 · 대여하는 분부 터 적용하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삭 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 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 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유)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 ② 제126조제1항제1호의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 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023년 1월 1일-----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저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A 223     | 조(비기  | 시주.             | 자의         | 국  | 내원천소     | _득  |
|-----------|-------|-----------------|------------|----|----------|-----|
| 에         | 대한    | 원               | 천징수        | 의  | 특례에      | 관   |
| 한         | 적용    | 례)              | <u>제15</u> | 6조 | 제12항 •   | 제   |
| <u>16</u> | 항 • 저 | 17 <sup>ह</sup> | <u>}</u>   |    |          |     |
|           |       |                 |            |    | <u>2</u> | 023 |
| <u>년</u>  | 1월    | <u>1일</u> -     |            |    |          |     |
|           |       |                 |            |    |          |     |